

2024. 6. 24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

건축기획과장

임우진

2133-7090

민간건축기술팀장

임동수

2133-7273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s://news.seoul.go.kr/citybu/ild/archives/139>

서울시,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한다...전국 지자체 최초

- 서울형 건설혁신 ‘부실공사 Zero 서울’ 후속대책...건축물 구조안전 강화
- ①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: 민간건축 착공 후 주요 구조 등 변경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
- ②사후 검증 지원: 구조안전 심의 지적사항 반영 여부 확인 및 심의 실효성 확보
- ③심의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: 대상 및 절차 등 규정해 체계적인 심의 운영

- 서울시가 ‘부실공사 제로(Zero) 서울’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.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,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.
- 또,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.
-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‘구조안전 전문위원회(건축위원회)

심의 및 운영기준'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(월)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'부실공사 제로(Zero) 서울'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·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.

- 지난 2015년 7월에 도입된 서울시 건축위원회 내 '구조안전 전문위원회'는 내부방침을 통해 운영돼, 굴토·경관 등 타 전문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심의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.

□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①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②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③ 체크리스트,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.

-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① 연면적 합계 10만㎡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②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.

□ 먼저,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.

- 주요 구조부의 재료·공법 변경,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.
-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,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.

- 또한,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.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.
 -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,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지적사항 반영 여부와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한다. (필요 시 현장방문)

- 마지막으로,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,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 및 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. 아울러, 심의대상, 시기,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.
 - 설계하중 및 중요도 등급의 적정성, 재료의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 심의를 위한 필수 검토사항을 제공하여 심의 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.
 - 또한 심의 시기, 심의 진행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안내하여 건축주가 사업 일정을 계획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.

-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 (news.seoul.go.kr/citybuild/archives/139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민간 건축공사는 설계, 현장 관리,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”며 “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참고자료 **구조안전 전문위원회(건축위원회) 심의 및 운영기준 개요**

□ **주요내용 요약**

구 분	주 요 내 용
대상 및 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 상)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), 2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연면적 합계 10만㎡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)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당초 자치구 심의대상에서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○ (시 기) 건축 인허가 후, 착공 전
운 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발표자) 건축구조설계자 ○ (배석자) 건축설계자, 토목설계자, 구조기술사, (해당시)감리 및 시공관계자 등 ※필요 시 건축주나 시행사(대리인) 배석가능
사후검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의 료) 허가권자(자치구 등)은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기획과에 사후 검증을 요청 ○ (운 영) 사후 검증 요청이 있을 시,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(필요 시 현장 방문 실시) ※ 당초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검증
변경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 상) 주요 구조부의 재료·공법 및 기초형식의 변경 등 4개 항목 ○ (시 기) 해당구간 변경 전 ○ (구 성) 당초 심의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
체크리스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항 목) 제출 도서, 도면의 수준,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의 적정성 등 심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13개 항목 안내 ○ (효 과) 사전 심의 가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건축구조 심의운영 진행

□ **심의 운영 절차**

